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65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정태호 · 이수진 · 박상혁
김주영 · 정일영 · 이학영
박홍배 · 진성준 · 정준호
강준현 · 이연희 · 안도걸
이용선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 · 관세평가 · 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안 제3조)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수출입기업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본원칙(안 제5조)

세관행정 지원 관련 사항은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애로 사항의 접수·발굴 및 처리(안 제7조 및 제8조)

수출입기업은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통관지연·과세오류 등으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이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국내외 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발굴한 애로사항을 조사·협의·중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세관행정 지원활동의 범위(안 제9조)

해외 세관 당국의 관세율 분석,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기업의 품목 분류 분쟁 대응,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정보 제공·컨설팅 등을 규정하여, 관세청이 체계적·다각적으로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 세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

조)

관세청은 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외국 세관 당국과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세관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제무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바. 지원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안 제11조)

관세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관세청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출입기업의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관계부처 협조 (안 제14조)

관세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자. 과세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안 제15조 및 제16조)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자료 등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과세자료 제공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 통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세관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예방·구제하고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등 세관 간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수출상대국의 세관·통관행정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3. “해외통관분쟁”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중 세관 당국 간 또는 국제기구·국제중재기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해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세관상호지원협정”이란 세관 당국이 관세 법규 준수, 위반행위 적발, 밀수·불법무역 방지, 무역촉진을 위해 세관 당국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협정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입기업의 통관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통관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외 통관제도의 개선 및 통관절차의 합리화를 통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관행정 협력 및 해외통관분쟁 등 해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기본원칙) ①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이하 “지원활동”이라 한다)은 공정성·투명성·실효성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③ 지원활동은 국제협약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관세청장은 국제 통관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및 발굴) ① 수출입과 관련하여 해외 세관 당국의 차별적 조치, 수출입신고 과정의 통관지연 및 과세오류, 그 밖에 세관·통관행정 상의 문제로 통관애로가 있는 기업은 관세청장에게 그 애로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1. 관세청 및 소속기관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민원 창구 및 관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2. 관세청 및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접수
3. 관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주재 관세관 또는 재외공관 민원 창구를 통한 접수
4. 수출상대국 현지 기업협의체 건의 등을 통한 해외 접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 외에도 자체

적으로 통관애로의 해소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소 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발굴한 통관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방법 및 절차)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발굴한 통관애로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에 의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조사·검토·조정·협의를 통한 조치
2. 국가 간 관세청장 회의, 세계무역기구·세계관세기구 등 국제 협의체를 통한 협의
3.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협회 또는 국제 중재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조정·중재 등 합의
4.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 또는 해당 부처로의 이첩

② 관세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통관애로 등의 해소 요청에 대하여 그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활동의 범위) ① 관세청장은 통관애로 등의 해소를 위한 세관·통관행정 지원 및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외통관분쟁 관련

가. 해외 세관 당국과 우리 기업의 관세·통관절차·원산지·품목
분류 분쟁 대응 지원

나. 가목의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사실 조사 및 법률·기술 자문
다. 「관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
이 상호주의에 따라 수출상대국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어 세
관행정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지원

라. 수출상대국 세관 당국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해외통관분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에 대한 지원

2.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련

가. 한국형 관세 제도·시스템 수출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개
선

나. 국가 간 원산지 증명서 교환 방식의 간소화·표준화

다. 해외 세관 당국의 통관환경 현대화 지원

라. 그 밖에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

3.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관련

가. 수출상대국 품목분류와 우리나라 품목분류의 연계표 작성·제
공

나. 국가별 관세율·통관제도·관세동향 등의 정보 제공, 기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다. 해외시장 개척·진출을 위한 품목별 수출동향 등 통계 정보 제공

라. 기업의 성실한 납세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신고 도움 정보 제공

마. 그 밖에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 관련

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통관절차 등 간소화

나. 공항·항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다. 그 밖에 수출입기업 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세관·통관행정 지원 및 수출입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관 당국 간 상호협력) ① 관세청장은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 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세관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대국의 세관 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1. 통관절차의 간소화
2. 세관기술의 상호지원
3.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4. 그 밖에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조직 등) ① 관세청장은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관세청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활동의 대상자, 관계기관 또는 해외 세관 당국 등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지원활동의 대상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문서·전자기록 등

의 제출 요구

2. 지원활동 대상 기업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

3. 해외 세관 당국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③ 실태조사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기업의 사무
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장부·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조사 개시 7일 전
까지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와 동
시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요구 및 조

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부처 등의 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조치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과세정보의 제공)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등의 해소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자료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외 세관 당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며 개인 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지원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